

제1차 방송통신위원회 회의록

1. 회의일시 : 2011. 1. 6.(목) 10:00

2. 장소 : 방송통신위원회 14층 회의실

4. 불참위원 : 없음

5. 회의내용

가. 성원보고

나. 국민의례

다. 개회선언

라. 회의공개여부 결정

마. 전차회의록 확인

바. 의결사항

1) 「보편적역무 손실보전금 산정방법 등에 관한 기준」(고시) 일부 개정안에 관한 건 - (2011-01-001)

- o 노영규 통신정책국장으로부터 보고를 받고, 손실보전금* 산정 시 명예퇴직에 따라 지급하는 퇴직가산금을 제외하기 위해 마련된 「보편적역무 손실보전금 산정방법 등에 관한 기준」(고시) 일부 개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함.

* 손실보전금 : KT가 시내전화, 공중전화, 선박무선서비스 등 보편적역무를 제공함에 있어 발생하는 손실비용 중 타 통신사업자로부터 보전받는 금액

- o 주요 내용

- 손실보전금 산정 시 고시 제5조제1항의 영업비용 중 제외 비용에 퇴직가산금을 추가하도록 반영
 - 현행 고시에는 제외 비용에 '판매촉진비'만 규정됨

2) 「주파수할당 대가 수입금 등의 배분비율」(고시) 제정안에 관한 건 - (2011-01-002)

- o 박재문 융합정책관으로부터 보고를 받고, 「전파법」 개정('10. 7. 23 공포) 및 동법 시행령 개정('10. 12. 31 공포)에 따라 주파수할당 대가 수입금 등을 방송통신발전기금과 정보통신진흥기금에 배분하는 비율을 정하기 위해 마련된 「주파수할당 대가 수입금 등의 배분비율」(고시) 제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함.

- o 주요 내용

① 주파수할당 대가 수입금 등의 배분비율

- 「방송통신발전 기본법」 제24조에 따른 방송통신발전기금 : 45%
- 「정보통신산업 진흥법」 제41조에 따른 정보통신진흥기금 : 55%

② 배분비율 적용기간

- 상기 배분비율은 2011. 1. 1일부터 2014. 12. 31일까지 적용

③ 기타 사항

- 2015년 이후의 배분비율은 양 기금의 재정수지 등을 감안하여 방송통신위원회가 지식경제부 장관과 협의하여 2014년 4월 30일까지 결정하되,
 -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기획재정부 장관의 조정에 따름
- 2001년에 할당한 IMT2000 주파수로부터 발생하는 수입금은 정보통신진흥기금에 편입함

사. 보고사항

1) 「스마트TV의 영향과 정책과제」에 관한 사항

○ 방송·통신·인터넷·제조업계를 포함한 미디어 시장 전반의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되는 스마트TV의 최근 동향과 발전전망, 국내 미디어산업의 대응역량 강화를 위한 정책과제 등을 박재문 융합정책관으로부터 보고 받음.

○ 스마트TV 시대의 대응역량 강화를 위한 정책과제 주요 내용

① 이용자 행태 및 시장영향에 대한 분석 강화

① 스마트 미디어 이용행태에 대한 종합조사 추진

- 스마트 기기 이용행태에 대한 모델링에 기초하여 온라인·모바일을 통한 미디어 서비스 활용현황에 대한 통계 개발·보급

② 스마트 시대의 환경변화와 미디어 시장영향에 대한 분석 강화

- 스마트 미디어 환경의 확산이 방송·통신·인터넷 등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구체적으로 분석하고 장·단기 정책과제 도출

② 업계간 공동협력을 통한 개방적 혁신 환경 조성

① 방송·통신·인터넷·IT제조 등 관련업계가 스마트 미디어 관련 협력을 통해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도록 적극 유도

- 관련업계 핵심 담당자가 참여하는 스마트 미디어 발전포럼 구성 추진

- 한국형 Hulu.com* 서비스 모델을 위한 차세대 스마트TV 서비스 개발 지원사업 추진

* 미국의 지상파방송사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인터넷 동영상 제공 사이트

- 양방향 방송서비스 활성화 종합계획 수립

- 현재 방송업계에서 추진 중인 다양한 양방향 서비스가 미디어시장 전체 관점에서 개방형 웹 표준 수용 등 조화롭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유도

③ 스마트TV 기술개발 및 인력양성

① 미래 스마트TV 시대를 선도할 핵심 기반기술 개발

- 음성 및 제스처 인식, 검색, 증강현실, 스마트 광고, 유해물 차단 등의 핵심 기반 기술 개발

- 현업 방송인 및 벤처인력 대상 스마트 미디어 관련 전문교육과정 운영

④ 스마트TV의 안정적 서비스 여건 마련

① 스마트TV 서비스의 법·제도적 기반 강화 추진

- 통합방송법 제정 추진 등과 연계, 스마트TV의 법적 개념과 포괄 범위 검토

② 사업자 자율에 의한 가이드라인 제정과 준수 장려

- 이용자의 관점에 입각하여 오픈 앱 마켓의 운영, 양방향 광고, 콘텐츠 내용 등의 측면을 자율적으로 점검할 수 있는 체계 마련

-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통한 사후 모니터링 활동 강화 추진

③ 이용자 보호를 위한 교육과 정보 제공 강화

- 시청자미디어센터를 통한 스마트기기 체험프로그램 및 활용교육 실시

- 개인정보보호 교육 중·장기 마스터플랜 수립 및 스마트기기 보안 위험성 검증 역량 강화

⑤ 중장기 스마트 미디어 발전 환경 조성

① 콘텐츠 경쟁력 강화

- 방송시장 활력 제고를 위해 유료방송 결합규제 완화 등 소유·겸영 규제개선 추진

- 콘텐츠 제작기업의 역량 강화를 위해 현행 외주제작 비율 및 협찬·간접광고 등 제도 개선 검토

- 콘텐츠 제작의 기본 인프라 강화를 위해 작가·연기자·연출가 등 신진세대를 위한 등용문 확대 및 디지털방송콘텐츠지원센터 건립

- 콘텐츠의 시장가치가 잘 반영되도록 방송광고 판매시장에 경쟁체제 도입

② 네트워크의 지속적 고도화

- 무선 네트워크 트래픽 증가에 대비하여 합리적 수요예측을 바탕으로 장·단기 주파수 공급계획을 마련하고 차세대 무선망(LTE) 구축 및 TV 유휴대역(White Space) 활용 추진

- 통신사업자의 망 투자와 혁신적 서비스 도입 측면을 동시에 고려하여 망 중립성 정책 방향 검토

③ 중장기 법 제도 기반 정비

- 현실과의 부합도가 점차 약해지는 규제 개선과제 발굴 및 정비

- All-IP화, 유·무선망 진화 등을 고려하여 상호접속, 보편적 역무 제도 등의 중장기 정비 방안 마련
- 플랫폼사업자의 독점력 남용, 개인정보보호 등 新규제수요 대응 등

2) 「스마트워크 활성화 추진계획」에 관한 사항

- 스마트폰 확산과 고화질 동영상 서비스의 대중화로 언제 어디서나 유연하게 근무할 수 있는 스마트워크 여건이 성숙됨에 따라, 국가사회 전반으로 스마트워크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된 「스마트워크 활성화 추진계획」을 황철중 네트워크국장으로부터 보고 받음.
- 주요 내용(3대 분야 10대 중점추진과제)
 - ① 범국민 스마트워크 문화확산 및 해외진출 지원
 - ① (스마트워크 문화확산) 정책설명회, 컨퍼런스, 실천캠페인(예:스마트워크Day), 우수사례 시상을 통한 리더 발굴 등 근무문화 개선운동 전개
 - ② (스마트워크 활성화 촉진법 제정) 세제지원, 근로자 권리보호, 정보보호 등 제도 정비를 통해 스마트워크 도입에 따른 장애요인 해소 및 활성화 도모
 - ③ (비즈니스 활성화 및 해외진출 지원) 국내 중소산업체의 글로벌 시장진출, 홍보 지원을 통한 스타기업 육성 및 국내기술의 브랜드력 강화
 - ② 여성, 노약자, 중소기업 등 지원을 통한 스마트워크 도입 촉진
 - ④ (스마트워크 확산모델 발굴) 스마트워크 파급효과가 큰 분야에 특화된 시범사업을 통해 저비용·고품질의 보급형 모델 개발 및 이용 확대
 - ⑤ (중소기업 및 소외계층의 스마트워크 이용지원) 여성·노인·장애인 등 근로 소외계층을 고용한 중소기업 등에 대해 스마트워크 이용 지원
 - ⑥ (영상커뮤니케이션 활성화 기반조성) 이동·현장·재택·센터·직장 어디서나 상호간에 효과적으로 협업할 수 있는 기반 조성
 - ③ 정보보호인증, 품질등급제 등 안전하고 편리한 이용환경 구축
 - ⑦ (정보보호 및 이용편의성 강화) 스마트워크 도입 가이드라인, 정보보호 권고, 보안 인증제도 및 품질등급제 등 안전하고 편리한 이용환경 조성
 - ⑧ (핵심 기술개발 및 표준화) 소셜 기반 협업과 사용자의 요구에 따른 업무환경을 제공하는 기술 개발 및 글로벌 테스트베드 구축
 - ⑨ (네트워크 인프라 개선) 언제 어디서나 스마트워크가 가능하도록 Giga 인터넷 조기 도입, WiFi·WiBro·LTE 구축 등 네트워크 인프라 고도화

⑩ (지능형 업무환경 조성) 클라우드 서비스 및 사물지능통신을 활용한 창의적인 지능형 업무환경 마련

아. 기 타

1) 차기 회의 일정에 관한 사항

- o 차기 방송통신위원회 회의 개최일시는 추후 결정하기로 함.

6. 폐 회 (11:40)